

의안번호	제 135 호
의 결 연 월 일	2011년 3월 일 (제 회)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김동환 의원 외 1인
발의연월일	2011년 3월 2일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135
----------	-----

발의연월일 : 2011년 3월 2일

발 의 자 : 김동환 의원

최병윤·김영주·김양희

박종성·정지숙·유완백

권기수·임현·김재종

임현경·이수완 이광진의원

1. 제정이유

- 충청북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우리지역의 문화유적을 정확히 안내 설명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문해설 인력 양성과 운영을 통한 관광 충북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 도내 관광현장에서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를 적극적으로 활용 및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2조~3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안 제4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 및 평가(안 제5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현장수습근무 및 표식(안 제6조 ~ 제7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 등 지급(안 제8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사무의 위탁근거(안 제9조)
- 문화관광해설사의 자체 협의회 구성 및 지원(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기본법」

나. 관련부서 협의 : 협의함

다. 예산조치 : 해당부서 검토(별첨)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11.1.26~2.15(제시의견 별첨)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문화·관광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전문해설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 문화,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과 안내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
2.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관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 대상자 선정심사에서 선발된 후, 도지사가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와 소정의 평가에 합격하고 현장수습 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 문화, 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 제5조(교육 및 평가) ① 도지사는 양성된 해설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해설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갖추어야 될 심화된 표현기술 및 기획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 과정과 새로운 해설 인력의 확보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제6조(현장수습 과정 운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사람에 대해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실제 해설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장 수습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 제7조(표식) 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 제8조(활동비 지급 등) ① 문화관광해설사가 도 및 시·군에서 주관·주최하는 계획에 의하여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 역량의 증진을 위한 자료수집 및 관광객들에 대한 해설을 목적으로 도내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시, 입장료 및 주차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9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조례의 목적에 적합한 교육기관에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협의회) ① 문화관광해설사는 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협의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관계법령발취

□ 관광기본법

제1조(목적) 이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 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 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외국 관광객의 유치) 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관광종사자의 자질향상) 정부는 관광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과 그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재정수반 요인

활동비 지급 및 도협의회 운영비 지원(제8조, 제10조)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 관련 활동에 따른 활동비 지급(안 제8조)과 도협의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안 제10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1) 제정조례안 제8조 및 9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 지급과 사무위탁비는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정확한 추계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그동안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급 실적을 근거로 추계하고자 한다.
- (2) 제정조례안 제10조에 따른 도협의회 운영비는 타 협의회 등의 운영비를 기초로 하여 추계하고자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1) 제정조례안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 및 교육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2010년과 2011년에 소요되는 예산에 비추어 볼때, 2012년 1,130백만원, 2012년 1,200백만원, 2013년 1,200백만원로, 2012년 이후 매년 1,2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등의 소요경비 추계

(단위: 백만원)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계
인원	162	200	230	250	250	
기 금	317	320	330	350	350	1,667
도 비	300	320	330	350	350	1,650
시군비	409	450	470	500	500	2,329
합 계	1,026	1,090	1,130	1,200	1,200	5,646

(2) 제정조례안 제10조 협의회에 따라 도협의회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매년 1,00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보흠(220-3031)

충청북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 의견

I. 조례안 제2조제1호

- **인견제출자** : 충청북도 문화관광 해설사회 회장 반중홍 외 2인
- **인견** : 조례안 제2조제1호 중 “자원봉사자”를 “전문 문화관광해설사”로 변경 요청
- **반영여부** : 미반영
- **미반영사유** :
 1. 조례안 제2조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정의 조항으로서 “문화관광해설사”란 용어의 정의를 함에 있어서 “문화관광해설사란 …… 문화관광해설사이다”란 문구는 맞지 않음.
 2. 문화관광해설사의 정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문화관광부, 2011.1)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전국적인 통일 사항임.

II. 조례안 제9조

- **인견제출자** : 충청북도
- **인견** : 제9조 제2항 신설
- **반영여부** : 반영

III. 조례안 제10조

- **인견제출자** : 충청북도
- **인견** : 제10조(협의회) 삭제
- **반영여부** : 미반영